

광주시 U대회 유치 신청서 접수

‘피말리는 2개월’...에드먼턴을 넘어라

인지도·네트워크 앞세워 유럽 공략 ‘복병’ 타이베이 아시아 표 잠식 우려

‘준비된 도시 광주나, 대회 개최 경험을 앞세운 캐나다 에드먼턴이나.’

지난 14일(현지시간) 국제대학스포츠포럼(FISU)의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 접수 마감 결과 이번 대회 유치전이 사실상 광주시와 에드먼턴 2강의 각축장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대회 유치가 첫 도전장을 내민 대만의 타이베이는 복병으로 분류된다. 이들 도시들은 오는 5월 23일 개최지 결정까지 2개월여에 걸친 ‘피말리는’ 접전을 펼친다.

월드컵 등 다양한 국제대회를 개최한 경력이 강점이다.

아시아권의 경쟁자인 타이베이도 인구 1천만명의 국제도시로서 접근성과 함께 스포츠 인프라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치 전략=지난해 2013년 대회 유치에 실패했을 때 FISU 집행위원들로부터 지적당한 경기장 시설 및 접근성 부족 등 문제점을 대폭 보완해 이 분야를 오히려 강점으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향한 도전(Challenge for the Best)을 설명하는 ‘best venues(경기장 시설)’ ‘best game(17개 경기진행)’ ‘best finance(재정운용)’ ‘best legacy(유산)’ ‘best management(관리)’ 등에도 이 같은 전략이 잘 나타나 있다.

광주뿐만 아니라 전남지역 주요 경기장까지 포함하는 17개 종목 42곳의 경기장 시설과 인천~광주 간 전세기 운항, 무안~광주 간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한 뛰어난 접근성을 강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유치전 전망=이번 대회 유치는 첫 번째 도전에 나선 타이베이에 불리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결국 광주와 에드먼턴의 양강구도로 압축될 것이라는 게 브뤼셀 현지 대회조직위원회 관계자 분석이다.

기대회를 준비하는 전조성 성격이 강한 데다 ‘2개의 중국’을 인정하지 않는 중국과의 관계가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타이베어도 대회 유치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만큼 유치를 결코 중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며 이 경우 아시아권의 표 분산이 우려된다.

반면 에드먼턴과의 양강구도로 가게 되면 누구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살얼음판 경쟁’이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에드먼턴은 미주 지역(3표)을 중심으로 유럽권의 표(13)를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보여 광주도 지난해에 그랬던 것처럼 유럽 표를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가 올해 유치전 승패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2015하계유니버시아드’ 유치를 위해 벨기에를 방문 중인 박광태 광주시장(왼쪽)이 14일(현지시간) 브뤼셀 동체 라 오펜 호텔에서 스테판 버그 FISU(국제대학스포츠포럼) 부위원장에게 대회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뒤 악수하고 있다. /브뤼셀=공동취재단

박광태 시장 “시민들 힘 모아 이번엔 반드시 유치”

“에드먼턴과 타이베이 둘 다 무시할 수 없는 상대지만 최후의 승자는 광주시가 될 것입니다.”

1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국제대학스포츠포럼(FISU) 본부에 ‘2015하계 U대회’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박광태 광주시장은 “지난해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해 반드시 유치에 성공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유치신청서를 제출했는데, 각오는?

▲광주와 에드먼턴, 타이베이 등 3개 도시가 경쟁을 벌이게 됐다. 2013하계대회 유치 실패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교훈 삼아 2015년 대회 유치 전략을 세우고 있다. 유치신청서 제출로 닦은 울린 만큼 시민의 힘을 모으고 FISU 집행위원들을 만나는 등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3개 도시가 신청했는데, 전망은?

▲에드먼턴과 타이베이 둘 다 무시할 수 없는 상대인 만큼 치열한 유치경쟁이 예상된다. 특히 경쟁 도시들도 나름의 전략을 세워 자신 있게 뛰고 있기 때문에 광범한 접전이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도 지난해 대회 유치 실패 원인 등을 분석하고서 철저히 준비해 나가고 있다.

—유치 준비 상황은?

▲2013년 대회 유치에 실패한 원인 중의 하나가 경기장 시설 등 인프라 부족이었지만 이번엔 경기장 시설을 지난해 대회 유치전 때보다 3배 가까이 늘렸다. 우리가 제출한 유치신청서(Bid File)에는 차별화된 유치 전략이 담겨 있다.

—현직시사가 특히 중요하데, 준비는?

▲4월 6일~9일까지 광주를 방문하는 실무단이 만족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대회 때의 미비점과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실무단이 새로운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온 정성을 쏟고 있다. 시민들이 지난해 대회 때처럼 이번에도 뜨거운 지지로 힘을 실어 줬으면 좋겠다. /브뤼셀=공동취재단

다주택·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증가 폐지

3주택 5,000만원 양도차익 세 부담 2,116만원 → 633만원

기획재정부가 15일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마련한 세제개편안은 우선 현재의 양도세 제도가 부동산 시장의 심각한 왜곡을 초래한다고 보고 이를 고쳐, 비사업용 토지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증가를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양도소득에 대해 기본세율인 6~35%(내년부터는 6~33%)만 내면 된다. 예를 들어 3주택자가 집을 한채 팔아 5천만원의 양도차익이 생긴다면 현재는 양도차익의 45%인 2천 116만원(주민세 포함)을 양도세로 내지만 16일 이후에는 633만원만 내면 돼 양도세 부담은 70% 가량 감소한다.

양도차익이 3억원이라면 증가세 될 때는 1억 3천 250만원이 과세되지만 기본세율일 때는 8천 908만원으로 33% 줄게 된다.

2주택자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반과세를 적용받고 있지만 이번 개편으로 항구적으로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역시 개인은 현재 60%(부가세 포함 66%), 법인은 법인세(11~22%) 외에 양도세 30%를 추가해 57.2%에 달하지만 앞으로는 모두 기본세율(6~35%)로 세금을 내게 된다.

개인 비사업용 토지 60% → 6~35%

기업 잡세어링 근로자 세제 지원도

구분	현행	개편안	
비사업용 토지	개인	· 기본세율(6~35%)로 과세 · 양도소득공제(최고 30%) 폐지 · 양기보유특별공제(최고 30%) 폐지	· 기본세율(6~35%)로 과세 · 2010년부터 6~33%로 과세 · 양기보유특별공제 계속 폐지
	법인	· 법인세(11~22%) 후 과세	· 법인세(11~22%)로 과세 · 2010년부터 10~20%로 과세
다주택자 양도소득	3주택 이상	· 50% 세율로 과세 (09~10년 한시적 기본세율 적용) · 양기보유특별공제(최고 30%) 폐지	· 기본세율(6~35%)로 과세 · 2010년부터 6~33%로 과세 · 양기보유특별공제 계속 폐지
	2주택 이하	· 기본세율(6~35%)로 과세 · 양기보유특별공제(최고 30%) 폐지	· 기본세율(6~35%)로 과세 · 양기보유특별공제 계속 폐지
비사업용 토지	개인	· 기본세율(6~35%)로 과세 · 양도세 30% 추가	· 기본세율(6~35%)로 과세 · 양도세 폐지
	법인	· 법인세(11~22%) 후 과세	· 법인세(11~22%)로 과세 · 2010년부터 10~20%로 과세

받을 수 있다.

재정부는 기업의 신규 투자를 이끌기 위해 기존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더해 작년 3년간 연평균 투자규모를 초과한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세액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임금삭감으로 일자리를 내는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계산할 때 내년까지 감소한 임금액의 50%를 1천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해준다.

외화유동성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서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국제채와 통안채에 직·간접 투자하는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물론 채권자를 조세원리와 시장 기능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거래가 활성화되면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는 물론이고 양도세 세수도



구분	현행	개편안	
비사업용 토지	개인	· 기본세율(6~35%)로 과세 · 양도소득공제(최고 30%) 폐지 · 양기보유특별공제(최고 30%) 폐지	· 기본세율(6~35%)로 과세 · 2010년부터 6~33%로 과세 · 양기보유특별공제 계속 폐지
	법인	· 법인세(11~22%) 후 과세	· 법인세(11~22%)로 과세 · 2010년부터 10~20%로 과세
다주택자 양도소득	3주택 이상	· 50% 세율로 과세 (09~10년 한시적 기본세율 적용) · 양기보유특별공제(최고 30%) 폐지	· 기본세율(6~35%)로 과세 · 2010년부터 6~33%로 과세 · 양기보유특별공제 계속 폐지
	2주택 이하	· 기본세율(6~35%)로 과세 · 양기보유특별공제(최고 30%) 폐지	· 기본세율(6~35%)로 과세 · 양기보유특별공제 계속 폐지
비사업용 토지	개인	· 기본세율(6~35%)로 과세 · 양도세 30% 추가	· 기본세율(6~35%)로 과세 · 양도세 폐지
	법인	· 법인세(11~22%) 후 과세	· 법인세(11~22%)로 과세 · 2010년부터 10~20%로 과세